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018헌마40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아” 선거구, 강서구 “라”
선거구 및 강남구 “바” 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
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또한, 동대문구 “사” 선거구, 중랑구 “사” 선거구 및 송파구 “차” 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자신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선거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기각, 각하]



2021. 6. 2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 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강남구 “바”선거구에, 청구인 김□□는 강동구 “바”선거구에, 청구인 나△△은 마포구 “마”선거구에, 청구인 나◆◆는 마포구 “아”선거구에, 청구인 박▲▲는 중랑구 “사”선거구에, 청구인 양★★는 동대문구 “사”선거구에, 청구인 엄◆◆은 송파구 “차”선거구에, 청구인 이▣▣와 이▽▽은 강서구 “라”선거구에, 청구인 김▼▼과 조◎◎은 강동구 “라”선거구에 각각 그 주소를 두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사람들로,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① 동대문구 “사”선거구(이하 ‘이 사건 동대문구 “사”선거구란’이라 한다), ② 중랑구 “사”선거구(이하 ‘이 사건 중랑구 “사”선거구란’이라 한다), ③ 마포구 “나”선거구(이하 ‘이 사건 마포구 “나”선거구란’이라 한다), ④ 마포구 “아”선거구(이하 ‘이 사건 마포구 “아”선거구란’이라 한다), ⑤ 강서구 “라”선거구(이하 ‘이 사건 강서구 “라”선거구란’이라 한다), ⑥ 강남구 “바”선거구(이하 ‘이 사건 강남구 “바”선거구란’이라 한다), ⑦ 송파구 “차”선거구(이하 ‘이 사건 송파구 “차”선거구란’이라 한다), ⑧ 강동구 “다”선거구(이하 ‘이 사건 강동구 “다”선거구란’이라 하고, 위 선거구란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자치구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동대문구 가 선거구	2	용신동
	동대문구 나 선거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다 선거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라 선거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마 선거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바 선거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사 선거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아 선거구	2	장안제1동
중랑구	소 계	15	의원정수 17 (지역구 15, 비례대표 2)
	중랑구 가 선거구	2	면목제3·8동, 망우제3동
	중랑구 나 선거구	2	면목제4동, 면목제7동
	중랑구 다 선거구	3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상봉제2동
	중랑구 라 선거구	2	목제1동, 목제2동
	중랑구 마 선거구	2	중화제1동, 중화제2동
	중랑구 바 선거구	2	상봉제1동, 신내제2동
	중랑구 사 선거구	2	망우본동, 신내제1동
마포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대표 2)
	마포구 가 선거구	2	용강동, 신수동
	마포구 나 선거구	2	대흥동, 염리동
	마포구 다 선거구	2	공덕동
	마포구 라 선거구	2	아현동, 도화동
	마포구 마 선거구	2	서강동, 합정동

	마포구 바 선거구	2	서교동, 망원1동
	마포구 사 선거구	2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마포구 아 선거구	2	성산2동, 상암동
강서구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 3)
	강서구 가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거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다 선거구	2	우장산동
	강서구 라 선거구	2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마 선거구	2	가양제1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2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강서구 사 선거구	2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아 선거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자 선거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강남구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남구 가 선거구	2	신사동, 논현1동
	강남구 나 선거구	2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다 선거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라 선거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마 선거구	2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바 선거구	2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남구 사 선거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아 선거구	2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자 선거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송파구	소 계	23	의원정수 26 (지역구 23, 비례 3)
	송파구 가 선거구	3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 나 선거구	2	방이2동, 오륜동
	송파구 다 선거구	2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송파구 라 선거구	3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송파구 마 선거구	3	삼전동, 잠실3동
	송파구 바 선거구	2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사 선거구	2	오금동, 가락본동
	송파구 아 선거구	2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자 선거구	2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송파구 차 선거구	2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	소 계	16
강동구 가 선거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동구 나 선거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 다 선거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동구 라 선거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동구 마 선거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바 선거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사 선거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동구 아 선거구		2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결정주문

1. 청구인 김□□, 김▼▼, 나△△, 조◎◎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청구인 박▲▲, 양★★, 엄◆◆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김□□, 김▼▼, 나△△, 조◎◎의 이 사건 심판청구

- 청구인 나△△은 마포구 “마”선거구에 주소를 두었음에도 이 사건 마포구 “나”선거구란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고, 청구인 김□□는 강동구 “바”선거구에, 청구인 김▼▼과 조◎◎은 강동구 “라”선거구에 각각 주소를 두었음에도 이 사건 강동구 “다”선거구란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을 따름이므로, 청구인 나△△은 이 사건 마포구 “나”선거구란, 청구인 김□□, 김▼▼, 조◎◎은 강동구 “다”선거구란에 있어 제3자에 불과하여 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 중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위 선거구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선거구란’이라 한다).

● 이 사건 선거구란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 비례 3:1)로 변경하였는데 그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가

제시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이 사건 동대문구 “사”선거구란, 중랑구 “사”선거구란 및 송파구 “차”선거구란은 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 양★★, 박▲▲, 엄◆◆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위 기준을 넘어선 이 사건 마포구 “아”선거구란, 강서구 “라”선거구란 및 강남구 “바”선거구란은 각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청구인 나◆◆, 이▣▣, 이▽▽, 권○○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위헌선언의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선거구구역표의 특성상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 비례 3:1)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일부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구역표의 특성상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초래될 점을 우려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2년에 실시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자치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